광주 주택가 폐건전지 수거함 태부족

최근 3년동안 동구·북구에 92개만 마련

홍보·교육 미흡…실효성 있는 관리 시급

광주 지역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율이 저조하고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폐건전지는 2008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분리 배출·수거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당국이 최근 3년 동안 시내 공공기관·아파트·주택가에 설치한 폐건전지 수거함은 1191개다.

이 중 주택가에 설치된 수거함은 북구·동구 각 86개·6개 등 92개뿐이다.

서구·남구·광산구 주택가에는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에 마련된 수거함 981개와 비교하면 설치율이 10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주택가 주민은 수거함 부재·부족에 불편을 겪고 있다. 건전지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기도 한다.

남구 주택가에 사는 김모(50)씨는 "집 주변에 폐건전지를 버릴 곳이 없다. 1~2개 버리려고 매번 15분 거리 주민센터 수거함까지 이동하기 번거로워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했다.

폐건전지는 분리 배출·수거 의무 대상인데도, 참여를 이끌 기초 시설이 부족한 셈이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매립·소각될 경우, 유해물질(카드뮴·수은·망간 등)이 배출돼 대기·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택 근처에 수거함을 설치하면 불법 투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24시간 수거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경비원이 상주하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가엔 이런 체계를 갖추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폐건전지 분리 수거 제도 취지와 배출·수거 일자·방법을 알리는 홍보·교육도 부족하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주변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거함 일부는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생 이모(18·여)양은 "건전지 폐기 방법을 교육받은 적 없다. 리모컨 건전지는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말했다.

주민이 24일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폐건전지를 수거함에 버리고 있다.

북구 주민 민모(26·여)씨는 "약국과 아파트 단지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어 분리 배출을 한다. 하지만 건전지가 유해폐기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영 팀장은 "폐건전지를 분리수거 하지 않고 버리면 대기·토양이 오염된다. 그 공기를 마시고 작물을 먹는 우리가 1차 피해를 입는다"며 "분리수거 공간 확대, 관리 인력 충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폐건전지 수거보상 포인트제'에 따라 폐건전지 20개를 모아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 제출하면 건전지 1묶음(2개)과 교환 가능하다.

김미희 기자

'잇따른 갑질' 전남체육회, 강진·보성체육회장 진상 조사

스포츠공정위 통해 사실관계 파악…최고 '자격정지' 가능

최근 전남지역에서 민선 체육회장들이 공무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상급단체인 전남도체육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전남도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강진과 보성체육회장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한 뒤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와 체육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며 체육회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공정위는 최근 강진과 보성공무원노조가 접수한 갑질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예정이다.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경찰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 사건 조사를 의뢰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강진군체육회 사무실에서는 지역체육회장 A씨가 스포츠산업단장 B씨(5급 사무관)를 수차례 폭행한 뒤 협박하며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흉기와 발로 B씨의 머리와 정강이를 수차례 때린 뒤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해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축구대회 뒤 B씨가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불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올해 초에도 군청의 다른 공무원을 폭행했으며 피해 공무원은 2월 중 전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건은 경찰이 인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정확한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11일에는 보성군체육회장 C씨가 공개석상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해 공무원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C씨는 '2020년 보성군체육회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감사'를 위해 방문한 공무원 등에게 "나를 무시하느냐. 군수를 찾아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당시 녹취록 등을 확보해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조사와 함께 징계를 요청했다.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관계자는 "보성과 강진체육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해 징계할 방침이다"며 "사안에 따라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 민선회장이기 때문에 급여가 없어 감봉 등의 징계는 할 수 없고 경고 조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선옥 기자

새벽에 소음 민폐, 망치 들고 경찰관에 주먹질 50대 집유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망치로 위협하며 주먹질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4시 20분께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사에게 망치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B 경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텔레비전 볼륨을 낮춰 달라'는 B 경사에게 '왜 남에 집에 들어오냐'며 이 같은 일을 벌인 뒤 멱살을 잡아 흔들어 마스크까지 벗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집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직무집행법상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있다고 인정'될 때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B 경사가 A씨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나 전국구 건달이야" 경찰관·술집 주인에 행패 60대 실형

술집 주인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보복 범죄까지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의 한 술집에서 깨뜨린 술병으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위협하고 모니터를 부순 뒤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께 같은 술집에 찾아가 '또 신고해보라'며 난동을 피우고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명기기를 출입문 벽면에 던진 뒤 5월 4일 오전 0시 30분께 지역 다른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전국구 건달'이라며 '건달들을 시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기울여지는 시기, 경찰관 4명에게 침을 뱉으며 위협·폭행한 점에서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성 착취·상습 불법 촬영 60대 항소심도 실형

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하고 음란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성매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성 청소년 5명에게 광주 지역 모텔에서 돈을 주고 30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청소년들의 알몸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교복을 입은 채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2월 9일 필리핀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 1일까지 여성 3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신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